

● 제289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09. 0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김정환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795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정환 의원(발의의원 10명)
- 나. 제안일 : 2019. 09. 31.
- 다. 회부일 : 2019. 08. 13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업의 내용과 상위법인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일적으로

조정함. (안 제4조제1호의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지원 사업의 내용과 상위법인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이 예측되므로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의사상자 지원사업(안 제4조제1호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	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체육시설 사용료, <u>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</u>	1. 「법」 제15조, 시행령 제17조의2 및 <u>별표3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과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</u>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
- 의사자 및 의상자(이하 “의사상자”라 한다)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, 법에 의하여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기념사업, 보상금,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2011년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조례 제정에 따라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음.
- 개정안은 감면대상을 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한 대로 준용하도록 하여 명확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합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고 사료됨.

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서울특별시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「법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체육시설 사용료, 공원 입장료, 공원 연장 이용료,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
2.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,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
3. 명절(설, 한가위)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
4. 의사자의 유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
5.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다만, 이용료 등의 감면이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장하는 각 조례에 직접 감면 내용이 규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(의사상자법 시행령 별표 3)

시설	요금 감면율	시설	요금 감면율
1. 고궁 및 능원	전액	6. 국공립 수목원	전액
2. 국공립 공원	전액	7. 국공립 자연휴양림	전액
3. 독립기념관	전액	8. 국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	반액
4. 전쟁기념관(대관공연 제외)	전액	9. 국공립 공공체육시설	반액
5.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(대관전시 제외)	전액		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함으로써 해석상의 명확성과 편의성 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- 의사상자는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공로를 기여한 시민으로 평가해야 할 것인바,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적합하고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지원방안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참 고 1 의사상자 지원 내용

□ 의사상자 지원 추진 실적(2019년 1월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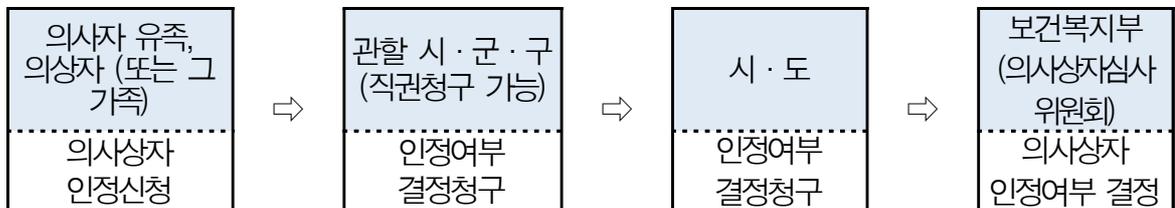
□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실적 : 146명, 2,776,500천원 지급

연 도	의사자		의상자		총 계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2018년	1	30,000	-	-	1	30,000
2017년	2	60,000	3	8,500	5	68,500
2016년	4	120,000	2	3,500	6	123,500
2015년	5	150,000	1	10,000	6	160,000
2014년	35	1,050,000	20	44,750	55	1,094,750
2013년	38	1,140,000	35	159,750	73	1,299,750
계	85	2,550,000	61	226,500	146	2,776,500

※ ' 11년 市 지원조례 제정, ' 12년 조례개정 → 이전 의사상자에 소급지급

※ 의사상자 인정절차(보건복지부)
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 포함) →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 / 관할 구청장 직권청구 가능 → 서울시 → 보건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)에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



- 지급방법 :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신청에 의거 신청인 계좌에 지급

※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의해 현금 지급 가능 : 현금수령증

- 지급순위

- 의사자 : 유족(순위 : 1. 배우자, 2. 자녀, 3. 부모, 4. 조부모, 5. 형제자매)
- 의상자 : 본인(사망시 의사자 유족 순위와 동일)

※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

- ▶ 공동신청 :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
- ▶ 단독신청 : 특별위로금 포기서(붙임 2) 제출 후 신청인에게 전액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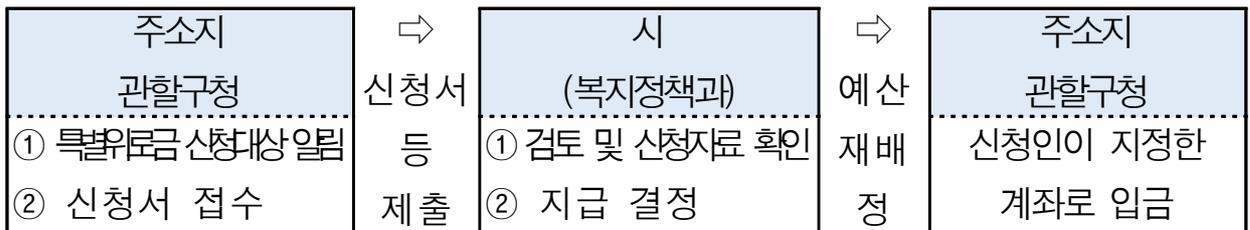
- 지급금액 : 의사자(3천만원), 의상자(1급 1,500만원 ~ 9급 50만원)

<의상자 등급별 특별위로금 지급금액>

(단위: 천원)

부상등급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지급액	15,000	12,500	10,000	7,500	5,000	3,000	1,000	750	500

- 지급절차



- 소요예산 : 150,000천원

: 산출근거 : 30,000천원(의사자) × 4명 = 120,000천원

15,000천원(의상자 1급) × 2명 = 30,000천원

의사자 기념표석 설치지원(조례 제4조)

- 설치대상 :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의사자 중 유족이 기념표석 설치 요구시
- 설치장소 : 의행이 일어났던 사고 장소에 설치 원칙
 - 사고현장이 도로·하천 등으로써 현장여건(교통장애, 미관저해 등)상 표석설치가 어려운 경우, 의행장소 인근 적정장소를 물색 후 설치